

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 안 자 : 운영위원장</p> <p>I. 주 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 <p>II. 제안경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’97.2.26)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. <p>III. 제안이유</p> <p>’91.7.8.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와 ’95.7.12.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아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 및 건의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,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 안 자 : 운영위원장</p> <p>I. 주 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해대책관련 업무지원 또는 처리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 <p>II. 제안경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와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 <p>II. 제안경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’97.2.26)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. <p>III. 제안이유</p> <p>’91.7.8.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와 ’95.7.12.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아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 및 건의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,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 안 자 : 운영위원장</p> <p>I. 주 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해대책관련 업무지원 또는 처리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 <p>II. 제안경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
---	--

8 (第92回－第4次)

<p>2.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‘97.2.26)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.</p> <p>III. 제안이유</p> <p>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천백만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재난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업무지도와 지진, 한해, 풍해, 수해, 화재, 폭발 등 각종 재해의 경감,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의 재해대책 업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업무를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의 재난 업무처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안자 : 운영위원장</p> <p>I. 주 문</p> <p>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괘적한 환경의 조성과 보전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·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p> <p>2.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</p> <p>II. 제안경위</p> <p>1. 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</p> <p>2.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‘97.2.26)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.</p> <p>III. 제안이유</p> <p>여성 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여성문제를 단일 창구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유류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등 여성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확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·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안자 : 운영위원장</p> <p>I. 주 문</p> <p>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</p>	<p>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안자 : 운영위원장</p> <p>I. 주 문</p> <p>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·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와 여성의 시정참여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p> <p>2.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</p> <p>II. 제안경위</p> <p>1. 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</p> <p>2.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‘97.2.26)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.</p> <p>III. 제안이유</p> <p>여성 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여성문제를 단일 창구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유류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등 여성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확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·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안자 : 운영위원장</p> <p>I. 주 문</p> <p>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</p>
---	---